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1-376호

2021년 제2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2021년 제2회 국가공무원[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농업 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총 36명)

직급	직렬	직류	담당예정 직무	채용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지원코드)
수의 주사보 (28)	수의	수의	동·축산물 검역, 가축방역 등 수의 전반 업무	1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A1
				1	동물질병관리부 역학조사과 A2
				1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A3
				1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B1
				1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 B2
				1	김해가축질병방역센터 B3
				1	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 B4
				1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C1
				1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C2
				6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 C3
				3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2과 C4
				2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 C5
				1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D1
				2	영남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 D2
				1	서울지역본부 김포공항사무소 E1
				1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F1
				1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 F2
				1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G1

직급	직렬	직류	담당예정 직무	채용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지원코드)
				1	제주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 G2
수의 연구사 (7)	수의 연구	수의	동물복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 기준실험 대체법 연구	1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H1
			동물질병 치료·예방과 관련한 동물의약품 평가·검정·개발·연구	1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H2
				1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H3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 및 검정·진단, 가축질병 발생 역학조사·진단·예찰·연구	1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 I1
				1	동식물위생연구부 조류질병과 I2
				1	동식물위생연구부 조류인플루엔자진단과 I3
				1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 I4
농업 연구사 (1)	농업 연구	작물 보호	식물병원체(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 연구·진단	1	영남지역본부 김해사무소 J1
계				36	27개 직위

-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응시자는 하나의 근무예정지(지원코드)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전보제한은 4년임(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
- ※ (직무기술서)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 요구능력 등 설명

나. 주요 업무 분야

- 채용예정 직렬별 '직무기술서' 참고[붙임]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60세로 한다.

-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하여야 함

○ 남성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응시연령

-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 20세 이상인 자(2001. 12.31. 이전 출생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

나. 선발 직렬별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직급 (계급 또는 분야)	채용 구분	응시자격요건
수의주사보	자격증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자격증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 축산기술사 ○ 축산기사(3년) : 축산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6-7급 상당)이 3년 이상인 자
수의연구사 (H1, H2, H3 I1, I3)	학위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채용 세부 전공분야(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
		<p>※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직무분야)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 (수의학, 수의약리독성학, 수의공중보건학, 준임상·임상관련 의학, 동물실험대체 관련 생명공학) 동물복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 동물 질병치료·예방·방역·공중보건, 기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 연구 등

임용예정직급 (계급 또는 분야)	채용 구분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 (수의약리독성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생화학, 수의미생물학, 생물학, 생명공학, 분석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사이드제) 동물의 질병과 약리학적 이해를 기본으로 동물용 의약외품(소독제, 살충제 등) 및 소독시설의 유효성 평가와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기법 개발 연구 등 - (잔류분석) 동물의 질병과 생리 이해를 기본으로 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평가와 동물중독증 검사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등 ○ 동식물위생연구부 바이러스질병과 :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줄기세포 재생공학, 생명공학, 생화학, 의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 줄기세포(성체, 배아, 유도, 만능 등)에 관한 연구, 동물의 난치성 및 바이러스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개발, 동물 바이러스질병의 진단. 예방 생물학적제제 개발 및 연구, 수의유용자원 수집.보전 및 광견병.일본뇌염 국제표준기술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등) ○ 동식물위생연구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 (수의학, 수의전염병학,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수의병리, 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류인플루엔자 시험·조사 및 연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예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조류인플루엔자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개량,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정밀진단 및 정밀진단기관 지정·관리, 조류인플루엔자 국가·국제표준실험실 운영 등
수의연구사 (I2, I4)	자격증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p>※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직무분야)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위생연구부 조류질병과 : (수의병리·조직학, 수의미생물학, 수의 공중보건학, 수의바이러스학, 수의예방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가축·가금 포함) 질병의 진단 및 예방과 관련하여, 전염병의

임용예정직급 (계급 또는 분야)	채용 구분	응시자격요건
		<p>병리해부·진단, 미생물(병원체) 분리·동정과 유전자 특성분석 연구분야, 인수공통전염병의 역학분석 및 예찰 연구분야, 약리·약효·백신 개발 등 예방 관리 연구분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위생연구부 해외전염병과 : (수의학) 동물 질병 이해를 기본으로 신종 및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진단에 관한 시험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연구, 생물학적 제제 (진단기술, 예방약 등)의 개량·개발 등
	자격증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자격증 소지 후 경력 3년)* : 식물보호기사 ※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경력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6·7급 상당)이 3년 이상인 자
농업연구사	학위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채용 세부 전공분야(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물학, 응용생물학, 식물의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농학, 원예학, 임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p>※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직무분야)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병리분야 식물병리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식물병원체(진균, 세균)의 진단 및 분류동정, 위험평가, 연구 업무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 공통 >

- 응시 자격 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또는 자격증 소지 후 필수경력),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28조)
-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제27조)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수의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석·박사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 경력의 범위 >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필요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1종)'을 제출

<학위의 범위>

- 연구사의 응시자격요건 중 '학위' 요건의 '채용 세부전공분야(관련 직무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연구사의 응시자격요건 설명 중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함

<해외에서 받은 자격요건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포스티유 필요, (아포스티유 미협약국) 영사 확인 필요
- ※ 학위증명서·논문·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시험절차 및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

- 다만,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 심사 분야별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 지침**

- 서류전형 심사기준(채용직렬별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별첨)

- | | | | |
|---------|------------|---------|----------------|
| ① 자기소개서 | ② 직무수행계획서* | ③ 직무연관성 | ④ 우대요건(차등배점)** |
| ⑤ 가산점 | | | |

- 직무수행계획서는 채용예정 직렬별 직무기술서 참고[붙임]
- 우대요건은 공고문 “4. 우대요건” 참조
- 가산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보유 시 등급에 따라 5점 이내 점수 차등 부여,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 (C3) 응시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은 우대요건 점수산정에서 제외
- 우대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공직가치관, 봉사정신, 책임감 등 공직자에게 필요한 인성검사 실시
-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인성검사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계획임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 평가

《공통사항》

- 심사 방법

- 응시자에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또한, 면접 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는 연구적격성 심사(연구사), 영어회화 구술 능력(수의주사보)을 병행하여 실시

- 보조평가방법

《연구적격성 심사 : 연구사》

- 방법 : PPT를 통해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을 발표(10분)하고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연구논리 및 창의력 ③ 연구 응용능력(발전가능성)
④ 직무이해도 및 수행능력 ⑤ 연구발표 전달력 ⑥ 연구발표 대응능력

《영어회화 구술능력 평가 : 수의주사보》

- 방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회화구술 능력을 평가

- 평가 주제

- 일상 생활영어 구사능력, 전문 분야 업무수행 능력, 전공 분야 설명소개 등
- * 시험주제는 시험위원 위촉사정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 시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6개 항목 / 상·중·하로 평가

- | | |
|--|--|
| ① 발음(Pronunciation)의 정확성
② 올바른 문법(Grammar) 구사능력
③ 답변의 유창성(Fluency) | ④ 듣기능력(Listening Comprehension)
⑤ 적정단어(Vocabulary) 구사능력
⑥ 답변의 적합성(Appropriateness) |
|--|--|

* 판단기준

상	우수가 3개 이상이고 미흡이 없는 경우	*면접시험평정표'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항목에 반영
중	상, 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하	미흡이 3개이상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다시 면접 실시

라.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최종 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마. 심사위원 선정

- (위원선발) 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를 활용하여 전원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서류전형) 2인 1조, (면접전형) 3인1조로 운영, 특정학교 및 이해관계 등 정실의 우려가 있는 자는 위촉에서 배제
 - * 위촉된 위원에게는 응시자와 사제지간, 친인척 관계, 직장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도록 사전기피 신청 안내
 -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에 국가인재 DB 인물정보 활용
 - 채용직렬별 응시인원대비 서류전형위원 위촉비율 및 서류심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심사위원 이해관계 기피, 불참 등에 따른 조치방안(1인 평가 불가)
 - 심사일 이전 기피·불참 통보 시, 심사위원 교체
 - 심사당일 기피·불참 통보 시, 구성인원 조정 또는 예비위원 투입
 - * (2인1조) 다른 조의 관련 분야(수의, 농업 분야 등) 심사위원에게 추가 배정하거나 예비위원 섭외·투입
 - * (3인1조) 2인 1조 평가로 운영(위원들의 평균점수를 기피·불참한 위원의 점수로 처리)하거나 예비위원 섭외·투입
- (기존 3인 1조) 전공2+인사1 → (변경 2인 1조) 전공1+인사1

4. 우대요건

< 우대조건 : 공통 >

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1) 우대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 기간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을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함
 - 1)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미흡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확인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
 - 2)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증명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력인지 확인할 것
 - 3)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일부 인정(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 주당 40시간 기준)

다.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논문 기여도별 차등 배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1.09.29.) 기준 5년 이내(**2016.09.30. 이후**)에 S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그룹별 차등배점, 응시자에게 유리한 1건만 인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우대요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2019년 11월 26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 어학성적 우대 기준

1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 토플(PBT 55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0점 이상), 토익 800점 이상, 뉴텝스 386점 이상, G-TELP 77점(level 2) 이상, 서울대(SNULT) 7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700점 이상-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6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75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2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 : 토플(PBT 540점 이상~550점 미만, CBT 200점 이상~220점 미만, IBT 75점 이상~80점 미만) 토익 750점 이상~800점 미만, 뉴텝스 355점 이상~386점 미만, G-TELP 70점 이상~77점 미만, 서울대(SNULT) 65점 이상~70점미만,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650점 이상~700점 미만-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50점 이상~60점 미만, 한국외대 (FLEX) 읽고 쓰기 650점 이상~750점 미만, 일본어 JLPT N2 100 점이상~150점 미만, JPT 640점 이상~740점 미만

마. 직무 관련 분야 박사학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응시자격 요건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
 - 수의주사보·수의연구사 :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
 - 농업연구사 : 농생물학, 응용생물학, 식물의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임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5. 가산요건

※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각각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C3\)](#) 응시자)에 한정)

□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산방법

-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예: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가점 적용

- 가점을 받지 않고도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취업지원대상자(자력 합격자)는 30% 상한 대상에서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함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그룹별 차등배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1.09.29.) 기준 3년 이내(**2018.09.30.(41회)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성적만 인정

구분	1그룹(5점)	2그룹(3점)
등급	1 ~ 2등급	3 ~ 4등급

5. 시험일정(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아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시험 실시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임

구 분	일 시
1. 채용공고 기간	'21.09.14(화) ~ '21.09.24(금)
2. 응시원서 접수	'21.09.27(월) ~ '21.09.29(수)
3.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1.11.01(월)
4. 온라인 인성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후 ~ '21.11.12(수)
5. 면접시험	'21.11.23(화) ~ '21.11.25(목)
8. 최종 합격자발표	'21.12.27(월)

※ 직급별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명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 게재

- 응시원서 접수번호, 합격자 조회 등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1.09.27(월) ~ '21.09.29(수), 09:00~18:00

- 아래 접수처에 직접 접수(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시간 12:00~13:00 제외)

- ※ 택배, 퀵은 접수 불가
- ※ 등기우편제출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1.09.29(수) 소인분까지 접수분으로 인정
- ※ **연구실적이 있는 응시자는 “연구실적 목록(붙임9) 한글파일”을 이메일(doraji36@korea.kr)로 반드시 송부**

- 응시원서 접수여부 개별 확인 방법

- ※ 접수여부 및 응시번호는 응시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메인 배너에서 조회
- ※ 응시원서 접수 후 다음날 14시 이후 확인 가능 (주말, 공휴일 등 제외)
(예) 응시자 등기우편 발송('21.09.27. 월) → 등기 도착('21.09.28. 화, 15~16시경 도착)
→ 홈페이지 확인('21.09.29. 수 13시 이후)
- ※ 게시기간 내에 접수여부 및 응시번호 반드시 확인.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
-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 ※ 직접접수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행복동 1층 고객센터로 방문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를 권장합니다**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서식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후 작성 · 제출

가. 전 직렬 공통사항(필수 서류)

○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붙임 1) * 등기발송 전 서류누락 등 자체 점검

※ 응시자는 증빙서류 우측 상단에 자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에 그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것

※ (공통) 제출 전 각 서류에 작성자 서명, 성명 기재여부 꼭 확인

○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붙임2) * 자필 기재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 현금접수 불가

-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 7천 원

1)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인쇄하여 응시원서 뒤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에서 우표형수입인지를 구입.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일 것

2) 수입인지 미부착시 응시원서 무효처리(“수입증지” 불인증)

3) 응시수수료 미첨부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함.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해당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3) * 자필 기재

※ 미제출 또는 성명(서명) 누락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검증동의서 1부(붙임4) * 자필 기재

※ 미제출 또는 성명(서명) 누락 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졸업증명서(전문대, 대학, 대학원) 사본 1부

* 심사위원 이해관계 배제용, 학교명은 전형위원회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이력서 1부(붙임6-1, 6-2, 6-3 중 해당 응시자격요건 서식 선택)

- 자필 또는 컴퓨터(한글 프로그램)로 작성 가능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7-1, 7-2)

- A4 용지 총4매(자기소개서 2매, 직무수행계획서 2매)이내, 작성 서식 준수

○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병역사항 기재 필수**

나.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 참조

○ 관련 직무분야 자격증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수의직·수의연구직, 해당자에 한함)
- 기타‘자격요건’으로 정하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성적서) 사본 1부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붙임8)

- 근무기간(연·월·일), 근무기간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기관명, 기관직인, 발급부서, 발급담당자 및 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정확히 명시할 것

1)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재직 기간(00년 00월 00일), 인사변동사항, 상·별 사항(표창, 중징계·경징계 내용 등), 직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2) 시간강사 등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00년 00월 00일 ~ 00

년 00월 00일(주 00시간)" 표시(주 40시간 근무자의 시간강사 등 중복 경력기간 불인정)

3)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불명확 등)로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 해당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 분장내역 등) 제출

- 폐업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④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을 제출

※ 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 단체)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없이 상기 서류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학위취득증명서 사본(석 · 박사 학위자)

○ 출입국 사실증명서 사본

※ 해외졸업(학위)자, 해외근무경력 제출자에 한함

○ 관련 계통학과증명서 사본(붙임5)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 제출

※ 외국대학·대학원에서의 영문논문만 있는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같이 제출

○ 연구실적목록(붙임9)

※ **수의연구사, 농업연구사 지원자 및 연구실적이 있는 응시자는 "연구실적 목록(붙임9) 한글파일"을 이메일(doraji36@korea.kr)로 반드시 송부**

○ 석박사 학위논문요약서 1부(붙임10)

- 학위논문요약서 1부(2매 이내) 및 논문 표지,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 외국 대학·대학원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같이 제출

○ 관련 직무분야 연구논문 요약서(붙임11) 및 증명 사본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1부 (2매 이내) 및 논문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각1부

○ 복무확인서 사본 1부 * 현역 군복무중인 자에 한함

※ 공중방역수의사는 '재직(만료예정)' 증명서 제출

○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

다. 향후 서류합격자가 제출할 서류

※ 제출된 자료는 최종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만 검증함

○ 경력확인용 증빙서류 사본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력에 한함

-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1종 선택)*
- ②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입금 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추가 자료 반드시 제출(예: 2021년도 분 소득증명, 2020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연도 분 소득증명)

- ③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 (홈택스 발급 가능)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가입이력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 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동물병원장은 ①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관리자 지정 여부 포함) + ② (소득)납부내역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동물병원을 폐업한 동물병원장은 ① 경력증명서(관리자 지정 여부 포함) ② 동물병원 폐업사실증명서 ③ (소득)납부내역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1) 서류합격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력확인을 위하여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불명확하여 경력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등 될 수 있음을 유의
- 2) 당해연도(2021년)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안되므로 급여입금내역 등 증명자료 추가 제출
- 3) 해외근무경력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 및 공증(한글번역본)을 제출

○ 연구적격성 심사용 PPT 발표자료 * 수의·농업연구사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 참조

※ PPT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라. 제출서류 편철방법

- 제출서류는 1권과 2권으로 분리(집계 등으로 구분)하여 아래 순서대로 해당 되는 서류를 편철·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스태플러, 클립 사용 금지

(앞장)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1권) ①응시원서 → ②수입인지(면제 시 관련 근거 서류 첨부) → ③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④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⑤졸업증명서 사본(전문대 이상) → ⑥학위취득증명서 사본(석사 이상) → ⑦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⑧관련 계통학과 증명서 → ⑨복무확인서 → ⑩ 주민등록 초본
- (2권) ①이력서 → ②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③자격증(수의사면허증 등) 사본 → ④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⑤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⑥수상실적(표창 등) → ⑦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⑧연구실적목록 → ⑨학위 논문요약서 → ⑩연구논문 요약서

8.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전문경력관 규정

9. 보수 및 근무시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관련 경력 인정과 향후 합격자의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은 별개 사항임 (합격 임용자의 호봉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별도로 자료 제출, 추진됨을 유의)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무예정지 참조)

10. 응시자 유의사항

-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증(면허증), 전공, 학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복수지원이 불가하므로 근무 예정지 1곳만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접수는 가능할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응시원서에 정확한 연락처(e-mail, 휴대폰전화 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4)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면접시험일 배부)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작성요령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5)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제84조의2 등에 따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6)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7)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8)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9)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0) 채용 직급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1)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12)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13)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우 경력 확인을 위해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 특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15)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054-912-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예정 직위별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원서 등 서식 각 1부.